



보험산업과 탄소배출 Scope 3

박희우 연구위원

요약

최근 탄소배출 공시에 대한 논의가 Scope 3을 중심으로 확대되며, 보험산업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글로벌 보험업계는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였지만, Scope 3 공시의 어려움을 나타내며 단계적 도입을 요구함. 이와 더불어 보험인수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공시기준 제정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보험회사는 선제적으로 Scope 3 공시에 대비하여야 하며, 정부는 단계적인 공시기준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탄소배출 공시에 대한 논의가 Scope 3¹⁾을 중심으로 확대되며 보험료적립금을 기업에 투자·대출하는 보험산업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서는 Scope 3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되며, 최근 국제사회의 탄소배출 공시에 대한 논의는 Scope 3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 보험산업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등을 기초로 조성된 자산을 대출·투자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타 산업과는 달리 Scope 3 15번째 카테고리인 투자(Investments) 혹은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을 필수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해야 함
 - 금융배출량은 금융회사가 투자, 대출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을 의미하며, 6가지 유형의 자산²⁾별로 탄소배출량을 공시하여야 함
 -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는 직접 배출보다 금융배출량이 700배가량³⁾ 더 높기 때문에 금융배출량의 공시가 의무화⁴⁾될 경우 보험회사가 탄소 고배출군 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음
- ISSB⁵⁾가 '22. 3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는 기업의 탄소배출 Scope 3가 포함되었으며, 최종안이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전면도입될 가능성이 높음
 - 국내 보험회사는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⁶⁾

1) Scope 3은 기업의 탄소배출 공시기준 중 가장 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해당 기업이 통제하지 않고 거래·투자하는 협력업체와의 원자재 구매, 제품판매 등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배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2) 6가지 자산은 주식 및 채권(Listed equity and corporate bonds), 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real estate), 대출 및 비상장주식(Business loans and unlisted equity), 모기지(Mortgages), 자동차대출(Motor vehicle loans),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임
 3) CDP(2020), "The Time to Green Finance"
 4) '22. 3월 I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는 기업의 탄소배출 Scope 3가 포함됨
 5) ISSB는 IFRS 재단이 '21. 11월 설립한 기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단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6) 조재린·황인창(2016), 「IFRS4 2단계 도입 연기 추진의 의미」, 보험연구원

IFRS 재단의 산하기관인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전면 도입될 경우 Scope 3을 공시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표 1〉 GHG 프로토콜에서 탄소배출 Scope 3의 15가지 카테고리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1. 원자재, 서비스 구매 (Purchased goods and services)	9. 다운스트림 운송 및 유통 (Downstream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2. 자본재 구매 (Capital goods)	10. 제품 공정 (Processing of sold products)
3.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Fuel- and energy related activities)	11. 제품 사용 (Use of sold products)
4. 업스트림 운송 및 유통 (Upstream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12. 제품 폐기 (End-of-life treatment of sold products)
5. 폐기물 처리 (Waste generated in operations)	13. 다운스트림 임대자산 (Downstream leased assets)
6. 출장 (Business Travel)	14. 프랜차이즈 (Franchises)
7. 통근 (Employee commuting)	15. 투자 (Investments)
8. 업스트림 임대자산 (Upstream lease assets)	-

자료: WRI(2022), "Technical Guidance for Calculating Scope 3 Emissions"

○ 지난 9월 ISSB가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에 따르면, 많은 응답자가 탄소배출 Scope 3 공시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냄⁸⁾

- ISSB는 '22. 9월 독일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전 세계 응답자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으며, '22년 말 공시기준 최종안과 시행일을 발표할 예정임
- ISSB에 따르면 대부분(Most)의 응답자는 재무보고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포함하도록 한 ISSB의 초안에 동의하였지만, 많은(Many) 응답자가 탄소배출량 Scope 3 측정에 많은 어려움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냄
- 우리나라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Scope 3 금융배출량 산출과정에서 피투자기업에 대한 데이터 가용성이 부족하고, 산출을 위한 최적의 방법론이 부재하여 정보의 유용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⁹⁾

○ 글로벌 보험업계는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였지만, Scope 3 공시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보이며 단계적 도입의 필요성을 요구함

- Allianz, SwissRe, MunichRe, IAIS 등 글로벌 보험업계는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공시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함

7) GHG(Greenhouse Gas) Protocol은 WRI(World Resources Institute)에서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국제 표준 산정·보고 체계임

8) <https://www.ifrs.org/projects/work-plan/climate-related-disclosures/#project-history>

9) 금융위원회(2022),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최종 검토의견」

- 하지만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¹⁰⁾ 일관된 공시방법론의 부재로 인한 비교 가능성 저하, 중복 계산 방지를 위한 명확한 방법론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글로벌 보험업계는 Scope 3 금융배출량 공시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글로벌 보험업계는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공시만을 선제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단계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¹¹⁾

○ 한편 보험인수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보험 관련 배출량(Insurance-Associated Emission) 공시 기준 제정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자와 자본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배출량은 자본공급자로서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보험 관련 배출량은 위험관리자로서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함
 - 금융배출량은 대상기업에 투자하여 소유권(부채·자본) 보유에 따른 탄소배출 귀속분을 공시한다는 개념이며, 보험 관련 배출량은 대상기업의 위험을 인수하여 성장과 위험 관리를 지원함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공시하는 개념임
-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는 보험인수와 관련한 탄소배출량인 보험 관련 배출량 산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원칙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함¹²⁾
 - PCAF는 금융회사 탄소배출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금융배출량을 측정·관리·공시하고 산출 방법론을 제시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이며, NZIA(Net-Zero Insurance Alliance)와 함께 작업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보험 관련 배출량의 측정방안을 검토 중임
- 향후 보험 관련 배출량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인수에서도 탄소배출 감축의 부담이 커질 것임

○ 보험회사는 산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인수와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Scope 3 공시에 대비하여야 하며, 정부는 단계적인 공시기준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와 보험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Scope 3 공시기준 관련 국제적인 논의의 흐름과 변화를 예의주시함과 동시에 고탄소 배출 기업에 대한 투자 및 보험인수 축소 등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임
- 한편 피투자기업의 탄소배출량 데이터의 신뢰성, 투명성, 비교 가능성 등이 산업·기업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Scope 3 공시를 위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는 보험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부담 가중을 감안하여 기업의 규모나 산업 종류별로 단계적인 Scope 3 공시기준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하며, 데이터 가용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관리 역량 강화 방안·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¹³⁾
 - '22. 3월 발표된 미국 SEC의 공시기준안¹⁴⁾에서도 Scope 3 공시의 도입 시기를 기업 규모 별로 차별화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

10) Scope 3 금융배출량의 공시를 위해서 보험회사는 피투자기업의 탄소배출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함

11) 다만, Allianz는 ISSB의 산업 전반의 Scope 3 공시안에 전적인 동의 의사를 나타냄

12) PCAF(2022), "GHG emissions associated to insurance and reinsurance underwriting portfolios"

13) 이해경(2022),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해외 논의 동향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14) SEC(2022. 3. 21), "SEC Proposes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